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의 안 번 호	12932
------------	-------

제안연월일 : 2014. 12. .

제 안 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4년 11월 7일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2014년 11월 12일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12.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4.12.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12.5.)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구제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피해자의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대안은 법률 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명을 구체화하고, 피해자의 정의를 수능시험 성적을 정정한 결과 2014학년도에 지원하였던 대입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 하향지원자 등을 제외한 직접피해자만이 구제대상임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와 피해자의 정원 외 입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피해자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에 따라 성적이 정정된 사람으로서 성적을 정정한 결과 2014학년도에 지원하였던 대학입학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을 말함(안 제2조).
- 나. 국가는 피해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대학의 장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5학년도 입학·편입학을 허가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피해자가 제3조에 따라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안 제5조).

라. 대학의 장은 이 법에 따라 해당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수가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수보다 적은 경우 2016학년도 대입전형에서 그 부족한 수만큼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음(안 제6조).

법률 제 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오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2013년 11월 7일 시행한 시험을 말한다.
2. “피해자”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에 따라 성적이 정정된 사람으로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정정한 결과 2014학년도에 지원하였던 대학입학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및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피해자가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입학을 지원한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등) ① 국가는 피해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5학년도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피해자의 2015학년도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학생의 정원) 피해자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모집인원의 초과 모집) 대학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수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다가 같은 항에 따라 다른 대학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수보다 적은 경우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그 부족한 학생의 수만큼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수립·공표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상의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7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제6조에 따라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하고자 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는 2016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